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2020. 3. 12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3월 12일

-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한필수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시행: 2020. 4. 1.)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방본부: 행정부지사 소관→도지사 직속으로 조정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보흠)

-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시행: 2020. 4. 1.)됨에 따라 소방본부를 행정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.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36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3월 4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시행 : 2020. 4. 1.)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소방본부 : 행정부지사 소관 → 도지사 직속으로 조정 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
관리실, 재난안전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
바이오산업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 및 환경산림국을
둔다.

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재난안전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바이오산업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, 환경산림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재난안전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신성장산업국, 바이오산업국, 농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균형건설국 및 환경산림국을 둔다.</p> <p>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.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소방기본법, 2020. 4. 1.시행】

제3조 (소방기관의 설치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·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, 2020. 4. 1.시행】

제6조 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① ~ ⑤ (생략)

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
2.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3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